

화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5. 28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'97. 5. 28

다. 상 정 일 자 : '97. 6. 23 (제55회 임시회 제1차 산업·건설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 안 설 명 자 : 도시과장 김 종 철

나. 개 정 사 유

- 화순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제도상 미비점 및 전라남도 농어촌 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와 중복된 부분을 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에 있어 농촌 지붕개량 촉진 부분을 삭제하고 국민 주택사업의 정의를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 조성사업으로 하며, 농촌 주택사업은 전라남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부분을 삭제하고 국민주택 사업비와 농촌주택 사업비 상호간의 전용금지 규정을 삭제함.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임근성)

- 동 조례는 전라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와 중복된 부분을 정비코자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" 생 략 "

5. 토 론 요 지

" 생 략 "

6. 심 사 결 과

「원 안 가 결」

7. 첨 부 : 화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

화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7-8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5. 28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1. 제안이유

화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, 개선하며 전라남도 조례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종전 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제 명 : 화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
- 시행일자 : 조례공포일
- 주요내용

조 항	내 용
제1조(목적)	조례의 목적을 정함에 있어 이미 시행이 끝난 농촌지붕개량 촉진사업 부분을 삭제하였음.
제2조(용어의 정의)	국민주택사업의 정의를 국민주택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 사업으로 함.
제2장 농촌주택사업 제5조(세입) ~ 제9조(융자 및 보조)	전라남도 조례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음.
제3장 근직영시멘트 제품 가공공장 운영 사업 제10조	기 삭제되어 있는 사항이나 금번 개정조례에서 조문 삭제
제17조(자금의 전용 금지)	개정전 조례에는 농촌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의 상호간 전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에서 이를 삭제함.

화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.

제2장 및 제3장을 삭제하고 제4장을 제2장으로 하며 제11조 내지 제16조를 제5조 내지 제10조로 하고 제5장을 제3장으로 하며 제17조를 삭제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농촌지붕개량 촉진에 따른 농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이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범위등의 준칙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 (용어의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	<p>제2조 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 사업을 말한다.</p>
<p>① 농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과 주택개량을 위한 (군) 직영시멘트제품의 가공공장의 설치운영(이하 "공장"이라 한다.)과 택지조성 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이축(공영 주택사업 특별회계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.)을 말한다.</p>	<p>(삭제)</p>
<p>②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.</p>	<p>(삭제)</p>

현행	개정
<p>③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.</p>	<p>(삭제)</p>
<p>제2장 농촌주택사업 제5조 (세입)</p>	<p>(삭제) (삭제)</p>
<p>제9조 (융자 및 보조)</p>	<p>제9조 (삭제)</p>
<p>제3장 군직영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 제10조</p>	<p>(삭제) (삭제)</p>
<p>제4장 국민주택사업 제11조 (세입·세출) 제16조 (보험가입)</p>	<p>제2장 국민주택사업 제5조 (세입·세출) 제10조 (보험가입)</p>
<p>제5장 보칙 제17조 (자금의 전용금지) 농촌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	<p>제3장 보칙 (삭제)</p>
<p>별지제1호 서식 농촌주택사업자금 [보조 융자] 신청서</p>	<p>(삭제)</p>
<p>별지제2호 서식 차용증서, 사업계획서</p>	<p>(삭제)</p>